

정보통신망법(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 ②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2000.8 정보통신부)

- 2) 통신질서확립법에 대한 각 단체들의 입장과 비판
 - 정통부의 통신질서확립법 입법예고에 대한 네티즌들의 입장
 - 정보통신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대한변협)
 - 시민사회단체 의견 종합

- 3) 통신질서확립법을 비판하는 글모음
 - 온라인 매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권력집중현상을 경계한다(김기중)
 -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표현의 자유(박성호)
 - 통신질서확립법, 표현의 자유에 대한 도전(장여경)

4) 통신질서확립법에 관한 기사모음

정보통신망법(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 개정안이 2000년 8월 10일 정보통신부에서 입법예고되었다. 이 법안은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과 질서확립을 목적으로 하며, 인터넷을 통한 불법적인 행위와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 네티즌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특히 표현의 자유와 권력집중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장관은 이 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정보통신망의 질서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인터넷은 표현의 자유의 공간이며, 과도한 규제는 인터넷의 생명줄을 끊는 것과 같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의 질서확립을 위한 조치는 필요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이 법안에 대해 "정보통신망의 질서확립을 위한 조치는 필요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불법적인 행위와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는 필요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에 대해 "정보통신망의 질서확립을 위한 조치는 필요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불법적인 행위와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는 필요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한 논의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법안 수정을 약속하고 있지만, 네티즌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전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인터넷을 통한 불법적인 행위와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는 필요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한겨레21

www.hani.co.kr/h21

기사섹션 : 사람과 사회

등록 2001.08.14(화) 제372호

[사람과사회] 넷의 자유 위협하는 '검열의 민간화'

정통윤, 사이트 운영자가 아닌 회선제공업체에 시정권고...동성애·사회단체 홈페이지 줄줄이 폐쇄

지난 8월10일 정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정통윤)가 입주해 있는 강남 사거리의 동아타워빌딩 앞에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정보통신 검열반대 '번개'가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무지개 깃발을 앞세운 '동성애차별반대 공동행동' 소속 동성애자들이 먼저 와 기다렸다. 뒤이어 진보네트워킹센터, 문화개혁시민연대 등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도착했다. 마지막으로 동성애자들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이성애자들의 모임인 '이반의 친구들'이 합류하자, 어느새 번개 참석 인원은 60명을 훌쩍 넘어섰다. 처음 만난 낯선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소개는 뒷전이였다. 번개 참석자들은 모이자마자 검은 X자가 새겨진 흰 마스크를 쓰고 구호부터 외치기 시작했다.

“무분별한 정보차단, 윤리위를 차단하라!” “정통윤의 무덤에 국화꽃을 던져라!”

집회 형식으로 치러진 이날 모임을 굳이 '번개'라고 붙인 이유는 7월 말, 대표적인 동성애자 사이트 '이반시티닷컴'(www.ivancity.com)이 폐쇄당했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남성동성애자들이 자기 소개글을 올리고, 채팅을 하고, 번개를 '따려' 사람을 만나던 사이트였다.

일부 삭제 권고가 사이트 폐쇄로 이어져

남성동성애자 최대 사이트, 이반시티닷컴은 지난 7월30일 폐쇄당했다. 폐쇄과정은 정통윤의 '해당정보 삭제요구'에서 시작되었다. 7월 중순, 이반시티닷컴을 심의한 정통윤은 일부 내용에 대해 음란판정을 내리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정보 삭제'를 요구했다. 정통윤의 '해당정보 삭제요구'는 이반시티닷컴의 회선제공업체인 한국인터넷데이터시스템(KIDC)으로 내려졌다. KIDC로부터 시정조치를 전해 들은 서버호스팅업체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폐쇄했다.

문제는 시정조치가 해당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삭제권이 전혀 없는 회선제공업체에 내려졌다는 것이다. '해당정보' 삭제는 홈페이지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이트 운영자나 사이트 운영을 대행하는 웹호스팅업체만이 할 수 있다. 정통윤의 시정권고를 받은 회선제공업체나 서버호스팅업체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해당정보가 게시돼 있는 서버 전체의 이용을 중지하거나 △회선을 아예 사용할 수 없도록 하거나 △해당 서버의 IP주소를 차단하는 방법밖에 없다. 결국 이반시티닷컴 폐쇄 사례에서 보듯, 회선제공업체에 내려진 정통윤의 '일부 삭제 권고'가 '사이트 전체 폐쇄'로 이어지기 십상인 것이다. 홍익대학교 방석호 교수는 이미 지난해 '통신질서확립법'에 대한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정부가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적 검열을 부추길 염려가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방 교수가 우려한 '검열의 민간화'라고 불리는 현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정통윤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일부삭제 또는 사이트 폐쇄요구를 한 경우는 많았다. 하지만 시정요구는 주로 웹호스팅업체들에 전달되었고, 회선제공업체나 서버호스팅업체에 시정요구를 하는 것은 새로운 경향이다. 진보네트워킹센터 장영경 정책실장은 “삭제권이 없는 정보통신사업자들에게 시정조치를 내린 것은 사이트 폐쇄를 노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결국 정통윤이 민간기업 스스로의 검열을 부추기는 새로운 검열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쪽은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시정조치를 한 것일 뿐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사업자들이 강제력이 없는 윤리위의 시정조치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뭘까. 시정요구 불응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시정요구를 받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요구에 불응하면, 윤리위는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불온통신의 취급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윤리위의 권고를 받은 정보통신부 장관은 같은 법 53조3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불온통신의 취급을 거부, 정지, 제한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다. 이 경우에도 전기통신사업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결국 이반시티닷컴의 예에서 보듯, 윤리위의 권고가 회선제공업체 등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명령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시장을 통해 강화된 통제

회선제공업체나 서버제공업체를 통한 정보통신윤리위의 새로운 '통제' 방식은 비슷한 시기에 사회단체 홈페이지에도 적용되었다. 정통윤은 지난 7월19일 진보넷 등 8개 사회단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구국의 소리' 게시물을 불온통신으로 심의·결정했다. 같은 달 31일 '해당정보 삭제' 요구는 온세통신, KIDC, 아이아시아웍스코리아 등 8개 사회단체에 회신을 제공하거나 서버를 제공하는 업체에 전달되었다. 이반시티닷컴의 예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들 사업자도 역시 '해당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없는 업체들이다. 이들이 해당정보를 삭제하려면 진보넷 등 사회단체 홈페이지에 무단침입하는 수밖에 없다.

8월3일 아침, 결국 전농, 통일연대 등의 홈페이지가 폐쇄되었다. 이들 단체의 웹호스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net'이 회선제공업체인 데이콤, 서버제공업체인 웹데이터뱅크로부터 사이트 접속을 차단당한 것이다. 이 조치는 '사람들.net'이 운영하고 있는 90여개 홈페이지들이 한꺼번에 폐쇄당하는 결과를 낳았다. 다행히 "정통윤의 '시정조치'가 강제사항은 아니"라는 '사람들.net'의 설득을 받아들인 웹데이터뱅크가 차단조치를 풀어 같은 날 오전 10시쯤 90여개 홈페이지 운영은 정상으로 돌아왔다.

진보네트웍센터의 회선제공업체인 온세통신에 내려진 윤리위의 시정조치는 더욱 그 의도를 의심케 한다. 윤리위는 이미 지난해 같은 '구국의 소리' 게시물에 대해 진보네트웍센터로 직접 시정조치를 내린 적이 있기 때문이다. 진보넷 장여경 실장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해 윤리위의 삭제요구를 거부해왔다"며 "자신들의 의도가 관철되지 않자, 회선제공업체를 통해 압력을 가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한다.

정보통신윤리위에서 시작되고, 시장을 통해 강화된 통제는 홈페이지 운영자들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실제, 최근 들어 일부 동성애자 사이트가 강제폐쇄를 두려워해 스스로 문을 닫기도 했고, 일부 사이트는 집중적인 삭제 대상이 되는 '대화방'을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성애자 홍현(23)씨는 "지난해 가입한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동성애자 카페 25개 중 15개가 이미 폐쇄되었다"며 "최근의 강제폐쇄사태를 보며 카페 운영자들이 스스로 불안을 느껴 폐쇄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한다. 레즈비언 사이트 '탱크걸' 운영자 하정수(40)씨도 "이반시티가 폐쇄되기 전만 해도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했다"면서 "막상 폐쇄되는 걸 보니 위기감을 피부로 느낀다"고 말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권고, 정보통신사업자의 과잉조치, 뒤따르는 네티즌들의 심리적 위축효과로 이어지는 '민간화된 검열'이 인터넷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신윤동욱 기자 syuk@hani.co.kr

<http://www.hani.co.kr/section-021014000/2001/08/021014000200108140372015.html>

The Internet Hankyoreh copyright(c) webmaster@news.hani.co.kr

기사섹션 : 사람과 사회

등록 2001.08.14(화) 제372호

[사람과사회] “앗, 내가 청소년유해매체?”

나도 모르게 내 홈페이지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돼 있다면? 동성애자 사이트 '엑스존'(www.exzone.com) 운영자 김아무개(39)씨가 그런 일을 당했다. 김씨의 홈페이지 엑스존은 국내 최초로 개설된 동성애 사이트로 3년여 동안 운영돼왔다.

김씨가 자신의 홈페이지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된 사실을 안 것은 지난 6월 말,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활동가들이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을 뒤지다 엑스존이 유해매체로 지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김씨에게 알린 것이다. 확인해본 결과, 김씨의 홈페이지는 이미 지난해 8월25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의 법적 근거가 되는 청소년보호법에는 '동성애'를 수간 등과 함께 변태적 성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엑스존은 '음란'을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된 것이다. 청소년보호법은 각 매체의 심의기관에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권한을 이양하고 있어, 정보통신윤리위가 인터넷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하는 주체가 된다.

2년 전부터 사용자들 사이의 토론을 거쳐 엑스존 초기화면에 '미성년자는 출입하실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띄워온 터라 김씨의 황당함은 더했다. 김씨는 “나도 모르는 새 이뤄진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은 한 사람의 인생을 윤리적으로 파탄시키는 행위”라고 항변했다. 지정 사실을 안 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번갈아 찾아다니며 항의해보았지만, 서로 책임을 미룰 뿐이었다. 고작 “사이트 운영자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사실을 통지할 의무는 없다”는 게 돌아온 답변의 전부였다. 그러나 ‘통지’ 의무는 없는데도, ‘처벌’ 규정은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고도 유해매체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만약 김씨가 알아서 ‘청소년 접근 금지’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처벌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상희 변호사는 “자신의 사이트가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한마디 해명할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유해매체로 지정된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앞뒤가 안 맞는 청소년보호법의 실체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일처리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http://www.hani.co.kr/section-021014000/2001/08/021014000200108140372034.html>

The Internet Hankyoreh copyright(c) webmaster@news.hani.co.kr

That Fits to Share with You

OhmyNews

2001.10.6. 토요일

사회	문화	정치	국제	교육	경제	스포츠	정보통신
----	----	----	----	----	----	-----	------

기사검색

- ① 회원가입
- ② 기사쓰기
- ③ 기사제보
- ④ 기사검색
- ⑤ 전체기사

이 기사를 메일로
이 기사를 프린트
이 기사에 관한 의견
이전 메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폐지하라"

<인권운동사랑방 논평>

서준식 기자 humanrights@sarangbang.or.kr

인터넷 검열의 칼바람이 8월의 무더위 한복판을 가로질러 싸늘한 한파를 일으키고 있다.

올해 들어 누드 작품이 게시된 홈페이지, 자퇴생들의 사이트, 동성애자 카페들이 줄줄이 폐쇄당했다. 얼마 전 500여 진보단체의 홈페이지를 호스팅하고 있는 진보넷 등은 접속 자체를 차단당할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 모두 정통윤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및 시행령 제16조 불온통신 조항을 들먹이며 시정권고를 했기 때문이다.

차단당한 사이트들은 어떠한 해명의 기회도 없이 표현의 자유와 소통의 기회를 빼앗기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이것은 분명 어떠한 폭력적 게시물보다 폭력적이며, 어떠한 불온정보보다 불온한 조치다.

하지만 그들이 근거로 들이대는 전기통신사업법의 불온통신이란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으로, 그 모호함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기에 이미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다.

정통부장관이 위원을 모두 위촉하고, 장관에게 활동내용을 보고하며, '불온통신'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는 정통윤은 자신이 민간자율기구라고 강변한다.

또 시정권고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조항이 없다고 '친절히' 안내하기도 한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자들은 정통윤의 '시정권고'를 충실히 받아들여 사이트를 폐쇄해왔고, 심지어 '다음'(DAUM)·'세이클럽'(sayclub) 등은 정통윤의 '시정권고'와 상관없이 수많은 동성애자 카페를 차단하기도 했다.

백번 양보해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부장관은 '시정명령'이라는 강제권이 있다. 결국 정통윤의 시정권고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명령권이라는 보완장치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 정도면 시정권고는 안 지켜도 그만인 선택사항이 결코 아니다.

결국 인터넷 표현의 자유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불온통신의 뒷에 걸린다. 정통윤의 심기를 건드리는 인터넷 표현물들은 모두 불온통신이라는 모호한 조항으로 엮일 수 있다는 뜻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통윤은 강력한 '검열기관'으로 행세하게 된다. 이와 같이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적 인권위에 군림하는 정통윤은 전혀 쓸모 없는 존재일뿐이다.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정보의 바다에서 거대한 암초가 돼 버린 정통윤은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정통윤을 떠받치고 있는 '불온통신' 조항은 당연히 위헌임을 확인한다. 인터넷 공간에서 폭군이 돼 버린 정통윤을 폐지하는 것이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꽃피우는 출발점이다.

[이어진 이전 기사]

[이어진 다음 기사]

당중판과 미국, 국제 인터넷...
통신을 차단한다!...

"인터넷 검열' 정통은 퇴장하라"...

2001/08/18 오전 2:41:05

기사제공 기관 : 인권운동사랑방 © 2001 OhmyNews

인권하루소식 제공

서준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좋은 기사! 나도 원고료를 주고 싶다!

아래 광고를 클릭해 주세요. 1회 클릭할 때마다 50원의 보너스 원고료가 기사에게 지급됩니다. 단 생나무기사는 광고를 클릭해도 보너스 원고료에 합산되지 않습니다.(한 기사당 독자별 1회 클릭에 한함)

2001 POSCO센터 메토벤 교향곡 연주회	이 가을, 향기로운 음악회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	---

▶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 4. [아랫 글 쓰신 분께] 하리수의 진실
조감도, 2001/08/18 오후 2:24:20
- 3. 하리수는 미국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보다 더 대접 잘 받고 유명하더군요.
미국에서, 2001/08/18 오후 1:29:05
-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광은...
뉴크, 2001/08/18 오후 12:45:15

전체 독자 의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의견 쓰기

전체독자로 돌아가기	전체댓글으로 돌아가기
------------	-------------

◀ back

top ▲

Home | 사회 | 문화 | 정치 | 국제 | 교육
 경제 | 스포츠 | 정보통신 | 사는 이야기 | 영화
 언론 | 여행 | 책동네 | 포토갤러리 | ON AIR
 오마이뉴스 광주전남 | 오마이뉴스 대구경북
 오마이뉴스 전북희망 | 오마이뉴스 미주소식
 기자만들기 | OhmyNews게시판 | 공개편집회의

copyright 1999 - 2001 OhmyNews
mail to ohmynews

That Fits to Share with You

Ohmy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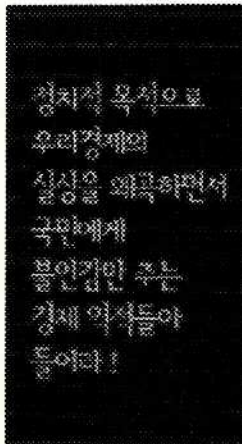
2001.10.6.토요일

사회 문화 정치 국제 교육 경제 스포츠 정보통신

기사검색

- ⊕ 회원가입
- ⊕ 기사쓰기
- ⊕ 기사제보
- ⊕ 기사검색
- ⊕ 전체기사

이 기사를 메일로
이 기사를 프린트
이 기사에 관한 의견
이전 메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단체 사이트 폐쇄 공문

전국 농민회연맹, 한국청년단체협의회,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웹사이트 폐쇄

변창수 기자 byun@sungnam.net

정보통신 윤리 위원회가 사회단체 호스팅 업체와 회선 제공업체 쪽에 게시물 삭제 및 사이트 폐쇄 공문을 보내 문제가 되고 있다.

인천지역네트워크쪽 '사람들넷'에서 호스팅하는 서버에 있는 전국농민회총연맹(www.junnong.org), 한국청년단체협의회(www.youthkorea.org),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www.615tongilyoudai.org)가 데이콤과 웹데이터뱅크로부터 사이트 폐쇄를 당했다가 복구된 상태이며 전국연합을 호스팅하고 있는 kidc, 인터넷 제국에도 공문을 보내 게시물 삭제 요청을 하였으며 진보넷에서 운영하고 학생넷 호스팅 업체인 인터넷 제국 역시 공문을 보내와 삭제 요청을 하고 있다.

이번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게시물 삭제 및 폐쇄 공문은 우선 내용을 떠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곳이 아닌 단순히 하드웨어와 회선을 제공하는 업체에 공문을 보낸 것이 상당히 비정상적인 방법이다.

웹사이트의 주체는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곳인데 그 곳에 공문을 보내지 않고 업체에 보낸 것은 공공기관에 약한 업체 쪽에 압력을 넣어, 방법이야 어쨌게 되었던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공공기관의 횡포로밖에는 생각되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공문에 보낸 게시물 삭제 내용도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단체와 상관 없는 곳에서 올린 글인데 이 게시물 몇 건 때문에 사이트 폐쇄까지 요청된 것을 보면, 이것은 인터넷 검열을 이용해서 사이버 공간의 단체의 활동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정보통신 검열에 대해 내일 각 사회 단체들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항의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집회는 8월4일 11시부터 정보통신 윤리 위원회 앞에서 한다.

2001/08/03 오후 5:44:07
© 2001 OhmyNews

변창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좋은 기사! 나도 원고료를 주고 싶다!

아래 광고를 클릭해 주세요. 1회 클릭할 때마다 50원의 보너스 원고료가 기사에게 지급됩니다. 단 생나무기사는 광고를 클릭해도 보너스 원고료에 합산되지 않습니다.(한 기사당 독자별 1회 클릭에 한함)

2001 POSCO센터
메트로폴 교향곡 연주회

이 가을, 향기로운 음악회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 3. 정말 열받습니다 (냉무~)
016 na, 2001/08/04 오후 4:36:43
- 2. 흠... 치사하군...(냉무)
흠..., 2001/08/04 오전 6:11:48
- 1. 정말 치사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키보드맨, 2001/08/04 오전 5:45:19

[이 기사에 대한 의견 쓰기](#)

[검색결과로 돌아가기](#)

[검색어연어로 돌아가기](#)

[◀ back](#)

[top ▲](#)

Home | 사회 | 문화 | 정치 | 국제 | 교육
 경제 | 스포츠 | 정보통신 | 사는 이야기 | 영화
 언론 | 여행 | 책동네 | 포토갤러리 | ON AIR
 오마이뉴스 광주전남 | 오마이뉴스 대구경북
 오마이뉴스 전북희망 | 오마이뉴스 미주소식
 기자만들기 | OhmyNews게시판 | 공개편집회의

copyright 1999 - 2001 OhmyNews
mail to ohmynews

That Fits to Share with You

Ohmy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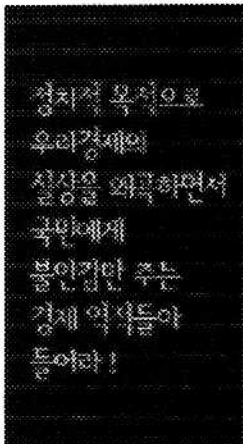
2001.10.6. 토요일

사회	문화	정치	국제	교육	경제	스포츠	정보통신
----	----	----	----	----	----	-----	------

기사검색

- 회원가입
- 기사쓰기
- 기사제보
- 기사검색
- 전체기사

이 기사를 메일로
이 기사를 프린트
이 기사에 관한 의견
이전 매뉴



정부는 무모한 '간섭'을 포기하라

시민공청회, 통신질서확립법 검열인가 자율규제인가

이광길 기자 humanrights@sarangbang.or.kr

5일 오후 1시 '통신질서확립법'에 대한 시민공청회가 서울 YMCA 회관에서 열렸다.

그간 정보통신부가 일방 추진해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안'(통신질서확립법)에 반대하는 28개 시민사회단체가 연 이날 공청회에서는 '자율규제'임을 주장하는 정부와 '검열'의 의도를 배제할 수 없다는 민간단체간의 입장 차이가 다시 한번 극명하게 드러났다.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대한 토론 발제에 나선 경희대 유진식 교수는 "통신질서확립법은 국가가 한 덩어리로 움직이던 시대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며, 국가가 개인의 모든 부분에 대해 간섭하고자하는 태도를 반영한 것"이라 잘라 말했다. 즉, ▲정보통신 기술 ▲사업자와 이용자 ▲정보통신의 내용 등 정보통신의 모든 것을 국가가 시시콜콜 간섭하겠다는 게 이 법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피스넷(PeaceNet)의 전용휘 사무처장은 "공청회를 거치면 그것으로 끝인가? 시민사회단체가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정통부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면서 "정보통신부가 사이버공간의 특성을 거의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규제에 나섰다"고 질타했다. 또 전 사무처장은 "민간차원에서 성공적으로 해오던 일을 정부에서 가져가는 게 자율규제인가?"라고 반문하며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민간차원에서 손조롭게 해오던 인터넷 주소관리 업무를 정보통신부가 장악하려는 의도를 추궁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나라당 김영춘 의원은 "정보통신부가 사이버공간에 대해 규제적 접근을 해서는 안되며, 시민들의 법 감정이나 과거 정부의 권력 운용에 대한 국민들의 피해의식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검열'의 의도는 없다?

이에 대해 정부측을 대표한 라봉하 정보통신부 정보이용과장은 "정부는 검열의 의도가 없으며, 다만 자율규제의 법적 테두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라 해명했다. 또한 지난 7월 20일에 있었던 정통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여러 부분을 손질했으며, 특히 이용자 로그 보관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라 과장은 지난달 26일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접속불능 사건을 겪으며 이 조항을 다시 삽입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제2부 '법률안과 인터넷 규제'에 대한 토론 기초 발제에 나선 방석호 홍익대

교수는 1997년 미연방법원의 통신품위법 위헌판결을 검토하면서 "정부가 사업자에게 형사처벌 위협을 하면 사업자는 '두려움' 때문에 과도한 자체검열을 하게 된다"며 '정부의 조종이 가능한 사적검열의 두려움'이란 문제를 제기했다. 또 백옥인 서울산업대교수는 "정보통신부가 시도하는 인터넷 내용규제는 별 실효성이 없다"며 "이 법을 만들지 않으면 나라에 무슨 큰 일이 나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청소년 유해정보 규제를 둘러싼 의견 차이도 컸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관계자는 "경제 규제는 풀고 개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게 세계적 흐름"이라며 "학부모와 교사들은 유해정보규제에 적극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스넷 관계자는 "규제해야 한다는 것과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다른 문제"라고 반응했다.

여성단체연합 관계자는 여성단체들이 이 법안에 찬성하는 것처럼 언론 작업을 한 정통부의 행태에 유감을 표하고 "인터넷상 성폭력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여성단체까지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국가가 사이버 공간을 검열해서는 안된다는 당연한 원칙 때문"이라고 못박았다.

인권하루소식 9월 6일

2000/09/06 오전 11:33:32

기사제공 기관 : 인권운동사랑방 © 2000 OhmyNews

인권하루소식 제공

[이광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좋은 기사! 나도 원고료를 주고 싶다!

아래 광고를 클릭해 주세요. 1회 클릭할 때마다 50원의 보너스 원고료가 기사에게 지급됩니다. 단 생나무기사는 광고를 클릭해도 보너스 원고료에 합산되지 않습니다.(한 기사당 독자별 1회 클릭에 한함)

2001 POSCO센터 베트남 교향곡 연주회	이 가을, 향기로운 음악회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	---

▶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이 기사에 대한 의견 쓰기](#)

[김재현의 열정 이야기](#) [김석화편으로 돌아가기](#)

[◀ back](#)

[top ▲](#)

Home | 사회 | 문화 | 정치 | 국제 | 교육
 경제 | 스포츠 | 정보통신 | 사는 이야기 | 영화
 언론 | 여행 | 책동네 | 포토갤러리 | ON AIR
 오마이뉴스 광주전남 | 오마이뉴스 대구경북
 오마이뉴스 전북희망 | 오마이뉴스 미주소식
 기자만들기 | OhmyNews게시판 | 공개편집회의

copyright 1999 - 2001 OhmyNews
mail to ohmynews



상세검색 | 기사검색

독자게시판

http://news.jinbo.net

정보통신 | 문화 | 경제 | 사회 | 정치

2001년 10월 6일

@ 정보통신

홈페이지는 유죄, 인터넷 음란물 논쟁 본격 가동

인터넷 사이트 '이승희 홈페이지가 유죄라 니...' (210.113.6.129/~sbroh/sunghilee/main.html)에 떠올라 있는 글들이다. 이 사이트를 만든 노상범(33)씨는 이달 중순께 열릴 고등법원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출처: 한겨레신문 98.12.7

“이승희 사진이 포르노입니까?”

“이승희 홈페이지가 유죄라니.... 작은 일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인터넷 사이트 '이승희 홈페이지가 유죄라 니...' (210.113.6.129/~sbroh/sunghilee/main.html)에 떠올라 있는 글들이다. 이 사이트를 만든 노상범(33)씨는 이달 중순께 열릴 고등법원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96년 8월 누드스타 이승희씨를 소개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열었던 그는 그 후 체포, 조사, 길고 긴 재판 과정을 겪어야 했다. 결국 지난 9월29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지난 10월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처음에는 ‘그냥 벌금을 내고 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포르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계기로 삼고 싶었습니다.” 노씨는 패소한다면 대법원, 헌법재판소까지도 이 사건을 끌고 갈 생각이다.

마광수, 장정일씨의 출판 음란물 논쟁에 이어 노씨의 사례는 국내 인터넷사이트 음란물 논쟁의 선두주자가 될 법하다. 벌써 이 사이트에는 ‘한국웹마스터클럽’ 등의 지지 성명서가 올라와 있고, 노씨의 재판을 후원하는 성금까지 답지하고 있다.

인터넷에서의 포르노 사이트의 합법성 인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최근들어 공공연하게 높아지기 시작했다. 인터넷 포르노 사이트의 음란성을 둘러싼 논쟁이 국내에서도 본격 가동된 것이다.

지난달 27일 열렸던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 ‘사이버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법적 통제의 문제점’도 논쟁의 화두를 제시했다. 홍익대 법학과 황승홍 강사는 “인터넷상의 음란 사이트 처벌 조항으로 볼 수 있는 현행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 2 ‘전기통신역무이용 음란죄’ 규정은 지나치게 모호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음란’에 대한 개념규정이 성인과 청소년에게 다르게 적용되지 않아, 성인들이 은밀하게 즐길 권리까지 침해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민주화와 진보적 통신을 위한 연대모임'이 오는 10일 펴낼 <98년 인터넷 검열백서>도 인터넷 포르노 사전검열의 문제점을 집중 다룰 예정이다.

장여경 대표는 "인터넷 포르노에 대한 검열은 다양한 정치적 주장에 대한 검열과 같은 차원의 문제"라고 말한다. 그는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성에 대한 각종 표현은 국가 차원에서 통제할 것이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터넷 포르노의 문제를 '표현의 자유' 시각에서 접근하면서 '법적 규제보다 자율 규제'를 촉구하는 공통점을 갖는다. 외국외 인터넷 포르노 논쟁에서는 일찍부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왔지만, 성 논의가 자유롭지 못했던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크게 두드러지지 못했던 목소리였다.

이런 주장이 일면 설득력을 갖는 것은 포르노성 인터넷 사이트들에 대한 규제와 차단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최근 등장해 논란을 일으킨 '한글섹스사이트 총집합' 사이트는 엄연히 국내법에 저촉된다. 하지만 외국 서버에 기반을 두고 제작돼 국내법으로 처벌할 뾰족한 수가 없다. 수없이 쏟아졌던 이승희 씨 관련 인터넷 사이트 제작자들 중 노씨와 강구일(97년1월)씨만 기소된 것도 대부분 국내 서버에서 제작됐다는 점 때문이었다.

국내 인터넷상의 음란물 정보 심의 기능을 맡고 있는 정보통신부에 딸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이영규 사무국장도 "하루에 전세계적으로 수천개씩 쏟아져 나오는 포르노성 사이트들을 일일이 모니터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국내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면서 사용자의 자율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과연 개개인에게 맡겨지는 자율규제가 가능한 것일까? 살인이나 아동간·성폭행을 미화하는 포르노 사이트까지도 인정해야 하는가? 청소년 보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 봉착하면 답변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97년 위헌판결을 받았던 미국의 정보품위법이 규제범위를 축소하면서도 '인터넷 포르노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성격을 담은 법안 'CDA2'로 변형돼 지난 10월 하원을 통과한 것도 이런 고민의 반영이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를 중시한다 하더라도, 어린이·청소년 보호 차원에서의 접근 차단장치 필요성을 쉽게 간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 등이 주최해 6일 열린 '성인 정보의 법적 규제와 대책'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섰던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 유이선 교수도 "인터넷 성인정보에 대한 자율규제와 공적인 규제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 정보품위법 제정과정을 둘러싸고 통신·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청소년들을 위한 음란물 정보차단 프로그램들을 옵션으로 제공하기 시작한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찾아보기 어렵다.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황상재 교수는 "우리나라 인터넷 음란물은 성인들을 위한 '표현의 자유'도, 청소년들을 위한 '보호장치'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진단한다. 최근 제기되는 인터넷 포르노의 '표현의 자유' 권리를 찾기 위한 길은 아직 험하다. 김미경 기자

기사입력날짜 : 1998 년 12 월 07 일

주현숙 schua@member.sing-kr.org



상세검색 | 기사검색

독자게시판

http://news.jinbo.net

보통 | 과학 & 정보통신 | 사회 |

2001년 10월 6일

@ 정보통신

'사이버결혼' 고민되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컴퓨터통신에서 이뤄지는 '사이버 결혼'의 규제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출처: 한겨레신문 98.12.16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컴퓨터통신에서 이뤄지는 '사이버 결혼'의 규제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윤리위원회는 15일 사이버 결혼에 대한 심의를 벌여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그렇다고 당장 음란으로 규정하기도 마땅치 않아, 일단은 시간을 갖고 더 지켜보기로 했다.

윤리위원회는 '사이버 부부'가 사이버공간 밖에서도 만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들고 있다. 남편과 아내로 컴퓨터통신을 통해 대화를 나누다 정신적으로 의지하는 사이로 발전하는 경우, 사이버공간을 벗어나 탈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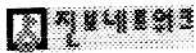
사이버 부부는 "밖(현실세계)에서는 만나지 않는다"는 계명을 정해두고 있다. 하지만 대화방 등에서 대화를 나누다 불건전한 만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않은 점으로 미뤄볼 때, 이 계명이 제대로 지켜진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이다.

더구나 최근 "남녀가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 않고 정신적으로만 의지한 경우에도 이혼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까지 나온 점을 감안할 때, 사이버 결혼이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윤리위원회 이영규 사무국장은 "사이버 결혼을 하는 컴퓨터통신 이용자 가운데는 기혼자도 있다"며 "앞으로 계속 검토해 문제가 있을 경우 컴퓨터통신 사업자에게 사이버 결혼방을 삭제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기사입력날짜 : 1998년 12월 16일

주현숙 schua@jinbo.net



상세검색 | 기사검색

독자게시판

http://news.jinbo.net

정보통신 | 과학 & 정보통신 | 사회 |

2001년 10월 6일

@ 정보통신

정보통신윤리위, 내년부터 인터넷등급제 시행키로

내년부터 '인터넷 등급제' 등 기술적, 기계적인 수단에 의한 일괄적인 인터넷 검열이 확산될 전망이 보이고 있어,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출처:

내년부터 '인터넷 등급제' 등 기술적, 기계적인 수단에 의한 일괄적인 인터넷 검열이 확산될 전망이 보이고 있어,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중앙일보 98.12.17일자에 보도된 관련 기사.

인터넷상의 음란, 폭력 등 불건전정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초부터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정보에 등급이 매겨질 전망이다.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17일 한국정보보호센터에서 열린 '정보내용 등급제' 세미나에서 '우리나라 정보내용 등급제'를 공개하고 내년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리위의 인터넷정보내용 등급제는 미오락용 소프트웨어 자문위원회(RSAC)의 인터넷 내용선별 표준기술체계(PICS)를 기반으로 개발된 것으로 '언어'(L), '성/누드'(S), '폭력'(V), '뉴스'(N) 등 네가지 항목으로 분류한 뒤 각 항목을 다시 '0'(모든 연령), '1'(성인용), '2'(등급외 정보)로 세분화, 등급을 매기게 된다.

예컨대 'S0'은 신체노출이 없고 성행위가 없는 로맨스를 다루는 웹페이지로 인식되며 'S1'은 체모나 유두노출이 없는 경우, S2는 자세히 성행위가 묘사된 웹페이지를 표시한다.

따라서 특정 웹페이지에 'L1 S2 V1'라는 등급이 매겨져 있다면 이는 언어적으로 흔히 쓰는 악의없는 약간의 욕설이 있고 자세히 묘사된 성행위를 담고 있으며 폭력성 측면에서는 정당화될 수 있는 심하지 않는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리위는 이같은 인터넷정보내용 등급제 시행을 위해 한국전산원 주관의 정보내용 선별소프트웨어를 개발, 각 인터넷접속서비스업체(ISP)와 정보제공자(IP)에 보급, 협조를 얻어 각 웹페이지에 등급을 매기는 한편 불건전 웹사이트 차단소프트웨어를 개발, 학부모, 각 사회단체 등에 보급키로 했다.[서울=연합]



상세검색 | 기사검색

독자게시판

http://news.jinbo.net

주요 | 과학 & 정보통신 | 사회 |

2001년 10월 6일

@ 인권/인권하루소식

말 잘못하면 입 떼가는 세상

정부, 한총련 의장 통신ID 사용중지

출처: 인권하루소식

정부, 한총련 의장 통신ID 사용중지

컴퓨터통신의 대중화에 따라 통신의 자유와 관련한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CUG(전용통신방)를 폐쇄함으로써 통신의 자유 침해라는 논란을 불러왔던 정부가 이번엔 한총련 의장 등의 개인 ID를 중지시켜 반발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컴퓨터통신 나우누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라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에 해당하는 문건을 게시한 이용자 및 게시물을 다음과 같이 삭제한다"며 "한총련 의장 강위원(ID: hcyimsi) 최석원(hynews) 씨의 ID를 사용중지하고 게시물 및 자료를 전부 삭제한다"고 밝혔다. 나우누리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 제재가 따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수사기관에서 개인 신상조회를 요청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으며, 그 대부분이 보안사범 계통이다"고 밝혀 통신공간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컴퓨터통신 상에는 정부의 조치를 비난하는 글이 잇따라 게재됐다. 한총련 통신단(ID: 해방상명)은 "나우누리의 조치는 형사들의 구두요청에 의해 이뤄졌다"며 "이는 통신기본권을 짓밟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정보통신검열철폐시민연대의 김영식 대표(ID: 노민해)도 "사법적 판단없이 행정부의 직권으로 통신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전기통신사업법 53조의 위력"이라며 "통신악법이 살아있는 한 우리나라에서 통신의 자유는 없다"고 말했다.

문제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통신부장관은 이 규정에 의한 통신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부 장관 직권에 의해 전화, 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의 박탈을 능하게끔 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6조는 불온통신의 내용을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이라고 규정해 자의적 적용의 우려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정부는 오히려 '수사기관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과 건의에 의해 통신수단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악안을 마련했다가 각계의 반대에 부딪혀 이를 취소하기도 했다. 당시 김기중 변호사(민변 회원)는 정보통신부에 보내는 의견서를 통해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포괄적인 제한권을 부여함으로써, 자의적 행사의 여지가 많아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위헌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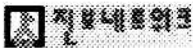
***** 통신인 구속 및 전용통신망 폐쇄 주요 사례 *****

- 93. 12. 7 현대철학동호회(현철동) 김형렬 씨, 사노맹등 조직유인물 게시판 갈무리 보관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구속(유죄 선고)
- 94. 3. 9 현철동 김영선 씨, 도서(아나키즘)게시 및 게시판 갈무리 보관 이유로 국보법 위반 혐의 구속(유죄 선고)
- 94. 3. 12 현철동 진상호 씨, 공산당 선언 및 도서(붉은 산 검은 피)게재 이유로 구속(1심 유죄, 항소심 무죄 선고)
- 95. 6. 6 "전기통신사업법 53조 시행령 16조 위반"이유로 한국통신노조 전용통신망 폐쇄(노조의 강력한 항의에 따라 6.16 폐쇄 철회)
- 96. 4. 9 하이텔 권중성 씨, 천리안 김동업 씨, "특정 후보 공개적으로 비방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 구속. 이외 18명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 96.6 북한홈페이지 차단 사건
- 96. 8. 30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을 전파하고 불법 폭력시위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한총련 나우누리 전용통신망 폐쇄
- 96. 10. 31 강릉잠수함 사건 관련, '그들이 무장일까'라는 글 띄운 윤석진 씨,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구속(1심 무죄선고)

1997년 5월 27일(화요일) 인권하루소식 제891호

기사입력날짜 : 1997년 05월 27일

사랑방 rights@jinbo.net



상세검색 | 기사검색

독자게시판

<http://news.jinbo.net>

정보통신 | 과학 & 정보통신 | 사회 |

2001년 10월 6일

@ 인권/인권하루소식

통신인 61.6% '자기검열'

외부제재 30.4% 경험 PC통신 공간에서 '검열'이 가져오는 위축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인권하루소식

외부제재 30.4% 경험

PC통신 공간에서 '검열'이 가져오는 위축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대표 장여경, 통신연대)가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 나우누리 등 4개 통신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통신인들이 '자기검열'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유효데이터 2백73개 가운데,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올릴 때 긴장감이나 구속감을 느껴 표현의 정도나 사용어휘를 조정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61.6%에 달했으며, 전체의 28%는 스스로 자신이 올린 글을 삭제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설문조사팀의 이혁수 씨는 "통신인들이 일상적으로 외부 및 자기검열을 의식하고 있으며, 검열과 제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한 응답자의 30.4%는 통신서비스사나 정부에 의해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밝혔으며, 제재받은 게시물에 과반수(52.1%)는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비판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대다수는 '국가기관에 의한 검열은 절대로 안되며'(65%) '통신서비스사의 검열도 불필요하다'(63.4%)는 반응을 나타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이 국민의 정보기본권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없다'(76.2%)고 답변했다. 반면 검열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도 31.5%나 차지했는데, 초중고생 등 19세 이하의 다수가 검열의 필요성을 제기한 반면, 학력이 높을수록 검열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5-10% 포인트 이상씩 진보적인 의견을 나타내는 특징을 보였다.

한편, 통신연대는 "민변, 전국연합, 민주노총과 공동으로 4개 PC통신사

앞으로 '검열'과 관련한 질의서를 보냈으나, 현재까지 답변서를 보낸 곳은 나우누리 뿐"이라고 밝혔다. 나우누리측은 답변서에서 "특정주소의 접속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공문에 의해 처리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규직 4명과 계약직 7명이 검열(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우누리측은 97년 동안 전기통신사업법 53조 및 54조에 근거해 외부에서 이용자 정보를 요청한 건수는 84건에 달하며, 집시법 5조2항에 해당되는 게시물 43건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통신연대는 이러한 조사 결과 등을 묶어 97년 검열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1997년 10월 14일 화요일 제984호

기사입력날짜 : 1997년 10월 14일

사랑방 rights@jinbo.net



상세검색 | 기사검색

독자게시판

<http://news.jinbo.net>

도움 | 과학 & 정보통신 | 사회 |

2001년 10월 6일

@ 인권/인권하루소식

<하루소식 1천호-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통신, 표현의 자유

무자비한 가위질, 자기검열의 확장 최근 관객 1백만을 동원, 흥행에 성공한 영화 <접속>은 남녀간의 사랑을 컴퓨터 통신이란 매체를 통해 다루고 있다. 이 영화의 흥행비결은 진부한 사랑애기를 사이버 공간이란 특이한 소재로 다가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출처: 인권하루소식

무자비한 가위질, 자기검열의 확장

최근 관객 1백만을 동원, 흥행에 성공한 영화 <접속>은 남녀간의 사랑을 컴퓨터 통신이란 매체를 통해 다루고 있다. 이 영화의 흥행비결은 진부한 사랑애기를 사이버 공간이란 특이한 소재로 다가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렇듯 불과 4-5년동안 우리사회는 '컴퓨터 통신'이라는 새로운 미디어를 경험하고 있다. 이제 컴퓨터 통신으로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의 차이를 넘어 서로 대화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장미빛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환상을 동시에 꿈꾼다. 그러나 감시와 통제가 도사리고 있는 사회에서 장미빛 미래는 그저 환상일뿐 '검열'의 칼날은 언제든지 당신의 존재를 소리소문없이 제거할 수 있다.

통신공간에서 검열을 집행하는 법적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이다. 96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 안녕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인정되면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검열을 집행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단없이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아이디를 정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인데, 이때 광범위한 사전 사후 검열이 진행된다.

최근에는 안기부법과 노동법이 날치기 통과되어 어수선했던 97년 1월 11일 '통신보안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 시행령 16조가 발표되었다. 시행령 16조는 수사기관이 사법부의 영장없이 자의적으로 통신권을 제한조치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통신연대, 민변 등 사회단체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통신공간에서 무자비한 가위질은 최근들어 더욱 심각하다. 97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 7월말까지 컴퓨터통신 아이디(ID) 사용 정지와 폐쇄건수는 3천2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년치 2천4백 13건보다 많은 것이다. 업체별로는 데이콤이 1천8백38명, 나우콤이 6백 23명, 한국피시통신이 3백59명의 아이디를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정지시켰고 삼성에스디에스는 2백6명의 아이디를 폐쇄했다.

이렇듯 국가검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회통제의 효과는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9월 「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대표 장여경, 통신연대)가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등 4개 컴퓨터통신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61.6%가 '자기검열'을 실시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검열은 결국 개인이 향유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스스로 제한하게 한다.

더욱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기소된 93년 '현대철학동우회' 김형렬 씨 사건(컴퓨터 통신에 사노맹 등 조직유인물 게재)이나 94년 진상호 씨 사건(공산당 선언 게재), 96년 윤석진 씨 사건(강릉잠수함 무장공비 관련 글 게재) 등을 통해서 볼 때, 결국 공안당국이 의도하는 것은 통신공간에서 "자체검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신공간에서 통신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활발하다. 96년 7월부터 통신연대는 통신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통신공간에서 정보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96년 한국을 방문하여, 인권상황을 조사한 유엔 의사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아비드 후사인 씨는 한국의 검열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고안을 내렸다. "한국정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행정적 간섭을 제한하고, 특히 이러한 권리에 대한 사전제약과 관련하여 기존의 행정절차를 공적인 법절차로 대체할 것을 권고한다"

주요 통신 탄압 일지

- 93년 12월 7일 현대철학동우회 김형렬 - 사노맹 등 조직 유인물 게시 및 게시판 갈무리 보관 - 구속, 유죄
- 94년 현대철학동우회 진상호 - 도서(붉은산 검은피)게재 및 공산당선언 게재- 1심 유죄 - 2심, 무죄
- 96년 4월 총선과 관련한 토론을 했다는 이유로 선거법을 적용, 통신 이용자2명 구속, 18명 불구속 수사
- 96년 6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북한에 관한 캐네다 홈페이지로 국내 접속 차단
- 96년 8월 나우누리 한총련 CUG 폐쇄
- 96년 9월 잠수함 무장공비 사건에 대한 의견을 게시하고 토론한 통신 이용자 33명 불구속 수사, '그들이 무장공비일까'라고 게시판 윤석진

씨 구속, 무죄

1997년 5,6월 정보통신부, '국가보안법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반 혐의로 전해투 등의 단체 아이디 및 일반 자료 이용자 아이디를 포함하여 최소 61개의 아이디와 몇 백선의 게시물 집단 삭제

1997년 10월 대선에 관해 토론한 3인의 통신인,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1997년 11월 25일 화요일 제1014호

기사입력날짜 : 1997년 11월 25일

사랑방 rights@jinbo.net



상세검색 | 기사검색

독자게시판

http://news.jinbo.net

보통 | 과학 & 정보통신 | 사회 |

2001년 10월 6일

@ 인권/인권하루소식

한권의 책 <'97 정보통신검열 백서>

진보통신단체연대모임 엮음/ 1997/ 통신공간에서 검열의 실태를 폭로하고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통신인들의) 노력이 한권의 자료집으로 묶여졌다.

출처: 인권하루소식

진보통신단체연대모임 엮음/ 1997/

통신공간에서 검열의 실태를 폭로하고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통신인들의) 노력이 한권의 자료집으로 묶여졌다. 이름하여 <'97 정보통신검열 백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만들어진 이 자료집에는 종종 검열의 논리를 정당화하는데 이용되고 있는 '음란물'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백서팀은 일부 시민단체가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성표현물'을 '검열'하는 것에 대해 "음란물과 청소년 탈선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음란물 규제를 명목으로 하는 일괄적인 규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일 뿐이며, 이러한 방법으로는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인터넷등급제를 짚어보고 있다. 인터넷 등급제는 크게 '민간에 의한 검열'과 '기술에 의한 검열'로 요약할 수 있는데, 넷스케이프사나 마이크로소프트사 등 거대자본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는 인터넷 등급제가 결국 기술에 의한 획일적인 검열로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을 사례를 들어 밝혀주고 있다.

'국가'라는 행정기관과 '거대자본'이나 '민간단체'에 의해서 다양하게 주도되고 있는 검열은 통제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사회 통신이용자들의 자기검열 실태를 '이용자 자기검열 인식 및 자기검열 현황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1998년 2월 14일 토요일 제1062호



상세검색 | 기사검색

독자게시판

http://news.jinbo.net

주요 | 과학 & 정보통신 | 사회 | 경제

2001년 10월 6일

@ 정보통신

인터넷 '내용등급제' 도입한다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청소년에게 유해하나, 권장할 만하냐를 따져 등급을 매기는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출처: 국민일보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청소년에게 유해하나, 권장할 만하냐를 따져 등급을 매기는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의 음란·폭력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및 시민단체, 인터넷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9월 시범도입한 뒤 내년 7월 본격 실시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인터넷 내용등급제란 인터넷 정보제공자가 일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표시하면 이용자가 내용등급을 참고해 정보를 선택하는 인터넷 내용규제방식으로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정통부는 이 제도를 PC통신과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에 적용하고 유해정보 등급을 선별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학부모들이 이를 PC에 설치, 자녀들을 유해정보로부터 차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등급기준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등급기준 심의기구에서 언어(욕설 등), 누드, 폭력 등으로 구분해 그 정도에 따라 부여된다.

정통부는 국내 콘텐츠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음란·폭력물과 같은 청소년 유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청소년 비유해 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해서도 등급표시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해외콘텐츠는 등급이 표시된 경우는 등급전환기준에 따라 국내등급으로 바꾸고 표시가 없는 동영상 음란콘텐츠 등은 등급표시기구에서 표시하기로 했다.

/윤봉섭 bsyoon@kukminilbo.co.kr

기사입력날짜 : 2000년 04월 06일

오병일 antiropy@jinbo.net



상세검색 | 기사검색

독자게시판

http://news.jinbo.net

정보통신 | 과학 | 정보통신 | 사회 |

2001년 10월 6일

@ 정보통신

정통윤의 베드러브폐쇄방침에 네티즌들 분개

인터넷상에서 건전한 성인문화확립의 가치를 내걸고 국내최초로 법인등록한 성인전문커뮤니티 베드러브 (<http://www.bedlove.net>)가 폐쇄될 위기에 처해져 있다. 그동안 베드러브는 정통윤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실은 베드러브의 자발적인 심의요청을 정통부에서 계속 회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출처: 뉴스보이

인터넷상에서 건전한 성인문화확립의 가치를 내걸고 국내최초로 법인등록한 성인전문커뮤니티 베드러브 (<http://www.bedlove.net>)가 폐쇄될 위기에 처해져 있다. 그동안 베드러브는 정통윤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실은 베드러브의 자발적인 심의요청을 정통부에서 계속 회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베드러브는 성인사이트 = 섹스사이트라는 등식을 극복하고 성인들만의 건전한 커뮤니티공간을 이룩하면서 성에 관련한 담론이 전혀 부재한 우리나라에서 올바른 성문화, 성인문화를 이끌어오면서 많은 네티즌들의 호응을 얻어왔다. 성인사이트는 대개 여성들의 참여가 극히 드문데 베드러브는 이례적으로 20~40대 여성의 참여가 활발하며 현재, 하루 방문객 수만해도 2만 5천~ 3만명에 이르는 성인전문 사이트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http://www.icec.or.kr>) 평가결과 4월 20일자로 폐쇄방침이 내려져있는 상태인데, 베드러브측은 정통윤의 사전 연락 없는 갑작스런 폐쇄방침을 확인하고 정통윤에 해명과 개선의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했지만 발언의 기회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체적으로 4월 8일 오후부터 네티즌을 상대로 정통윤의 성인전문사이트 폐쇄조치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기시작했다.

의견수렴게시판에는 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을 반사회적이라고 여기는 정통윤의 시대착오적인 성의식과 자의적인 잣대, 해당 사이트측의 해명을 할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는 일방적인 운영방식, 사이트 심의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네티즌들의 의견수렴을 무시한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태도, 개선조치라곤 없는 제재와 규제일변도의 운영방침등 정통윤을 비판하고 베드러브측을 격려하는 네티즌들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베드러브에 대한 옴모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견도 올라오고 있으며 우리사회의 폐쇄성과 후진성에 대한 절망의 심정을 적은 글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베드러브가 추구하는 건전한 성문화, 건전한 성인문화를 위한 사이트의 이념에

맞지 않는 게시물들은 운영자와 많은 도우미들에 의해 삭제되는 등 게시판 관리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으나 24시간 오픈되어있는 인터넷의 특성상 불온게시물이 즉시 삭제되지 못하는 수도 있는데 이러한 문제되는 글들만을 캡쳐해서 베드러브를 폐쇄되어야할 음란사이트라고 판단하는 정통윤의 처사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지난 98년부터 현재까지 올라온 수천개의 게시물들을 가지고 사이트의 음란성등을 판단해볼 때 베드러브는 여성월간지 수준이며 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보수적이라할 정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다만 성을 수치스럽거나 무조건 숨겨야할 대상이 아니라 성인들 사이의 담론을 통해서 양지에 드러내놓고 같이 이야기 나누어야 할 대상으로 여기면서 우리사회의 비정상적인 성문화의 극복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진보적이라는 것이 베드러브를 방문한 네티즌들의 생각이다.

이러한 사정을 외면하고 일부 사용자의 몇몇 게시물만 가지고 베드러브가 폐쇄되어야할 음란불온사이트라고 판정한다는 것은 우리사회에서 성인의 공간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성인들의 자율적인 커뮤니티 운동을 부정하는 것이다. 정보통신위원회가 베드러브에 대해 폐쇄되어야할 불온음란사이트라는 판정을 내림으로 인해 그동안 베드러브를 찾으며 성에 대한 담론을 해왔던 많은 선량한 사람들은 반사회적인 행동을 해온 셈이 된다고 할 것이다.

현재 베드러브의 상업적인 전망은 유망한데 베드러브는 향후 베드러브를 통한 수익금의 상당부분으로 우리사회의 건전한 성문화를 위한 자율적인 계도와 함께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왜곡된 성문화의 부산물인 미혼모와 해외 입양아문제등을 해결하고 사회적 약자인 이들을 원조하기 위한 민간단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건전한 성담론을 통한 우리사회의 성문화개선, 여성지위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베드러브를 방문해보시고 정통윤의 사이트 폐쇄조치에 대한 의견을 (<http://www.bedlove.net/abc/stop.htm>) 적어주시길...

이승훈 기자

기사입력날짜 : 2000 년 04 월 10 일

장여경 della@jinbo.net



상세검색 | 기사검색

독자게시판

<http://news.jinbo.net>

보통 | 과학 & 정보통신 | 사회 |

2001년 10월 6일

@ 정보통신

'통신질서확립법' 밀실추진

최근 정보통신부는 온라인매체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정보통신부 관련기구가 완성안을 만들어놓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보화전략회의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법안의 내용을 기정 사실화시켜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일고 있다.

출처: 인권하루소식

정통부에 관한 집중, 통신검열 우려

최근 정보통신부는 온라인매체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정보통신부 관련기구가 완성안을 만들어놓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보화전략회의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법안의 내용을 기정 사실화시켜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일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준비중인 법안은 「개인정보보호및건전한정보통신질서확립등에관한법률」(이하 질서확립법)이라는 제목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하 이용촉진법)을 개정한 법률안이다. 정보통신부가 지난 12일 열린 정보화 전략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강화하고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정비키로 했다'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공식화된 이 개정안은 20일 공청회를 거친 후 입법 예고되며 올 10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정보화 사회에서 밀실추진?

관련 민간단체들의 비판은 이런 일방적인 '과정'에 대해서부터 시작된다.

김기중 변호사는 "아직 법안을 공개한 것도 아니고, 이번에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은 밀실추진으로 봐야 한다"며 "현대사회에서 미리 내놓고 얘기를 해야지, 미리 완성된 안을 마련해 놓고 의견을 말하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비난했다.

또 김종남 YMCA 열린정보센터 사무국장은 "질서확립법의 마련은 철저히 정보통신부 산하기구만으로 이루어진 작업이며 어떤 전문가들이 참여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은 "정부가 이 법안을 추진한다는 것을 감지한 것은 2주도 채 되지 않는다"며 "정보화사회에 들어선 우리들에게 이런 문제는 철저히 공개되고 투명화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질서확립법'의 내용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온라인매체와 온라인커뮤니티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정보통신부와 산하단체에 집중된 점 △헌법재판소에서 현재 위헌여부를 가리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의 '불온통신' 규정을 오히려 '불법정보'라는 이름으로 확대 규정하여 사실상 '검열'로 작용할 수 있는 점 △선부른 판단이 어려운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도입을 규정한 점 △정보제공자 뿐 아니라 이용자의 책임을 과도하게 규정한 점 등을 들어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시대착오적이고 불건전한 권력적 개입"이라 반발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저지'해야 한다

그러나 '질서확립법'의 내용은 일부 언론에 의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청소년 유해정보 규제'로만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김 사무국장은 "개인정보와 청소년 보호는 당연히 동의할 원칙이지만 문제는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느냐에 있다"며 "질서확립법은 상식 이하의 방식을 택하여 정보통신부와 산하기관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른다. 어느 누가 그런 힘을 부여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일부 긍정적인 면보다는 전체적인 피해가 큰 법안이기 때문에 '일단 저지'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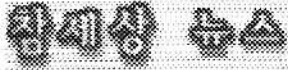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정책실장은 '질서확립법'이 시행될 때 네티즌들에게 닥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온라인매체에 글을 올렸는데 '불법정보'란 딱지가 붙어 삭제된 상황이다. 이에 글을 올린 이가 항의하고 싶어 이의를 제기하면, 그의 글에 '불법'이란 딱지를 붙인 기관(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 '분쟁조정'의 권한도 갖고 있는지라 결국 '같은 기구'가 모든 상황을 처리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 자신도 모르게 '감시'를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며 모든 이용자가 컴퓨터범죄 혐의자가 된다. 표현물에 대한 불법성 판단은 사법기구도 어려워하는 일인데 그 불법성의 판단을 행정기구가 갖는 상황에서 '불량이용자'의 명단에 오른 이는 자신이 사용하던 기존 통신망 외에 여타 통신망의 이용도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즉 항시 통신이용권을 박탈당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한편 이 문제에 관하여 현재 진보네트워크, YMCA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류은숙]

기사입력날짜 : 2000년 07월 20일

장여경 della@jinbo.net



http://news.jinbo.net

2001년 10월 6일

상세검색 | 기사검색

독자게시판

도움 | 과학 & 정보통신 | 사회 |

@ 정보통신

"개인정보 보호나 제대로 해라"

20일 정보통신부는 삼성동 COEX 컨퍼런스 센터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출처: 인권하루소식 제1660호

정보통신부 '통신질서확립법' 공청회, 줄속추진 질타

20일 정보통신부는 삼성동 COEX 컨퍼런스 센터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관련기사 본지 7월 20일>

기조발제에 나선 박광진 한국정보보호센터 팀장은 '개인정보보호의 강화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이라는 측면에서, 황승홍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팀장은 '불건전정보 규제'라는 측면에서 개정시안을 설명했다. 이에 상당수 참석자들은 "시안이 지나치게 줄속으로 추진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중원 서울 YMCA 시민사회개발부장은 "2조 6항의 불법정보에 대한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행정당국이 이를 자의적으로 이용할 여지가 있으며 이로 인해 정보이용자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종성 데이콤 상무이사도 "개정시안에 불법정보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청소년 유해정보 규제를 명분으로 도입하려는 인터넷 내용등급표시제도 도마에 올랐다.

신중원 부장은 "등급표시를 공적기관에서 주도하겠다는 것도 시대착오적이지만 그 구체적 내용이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것은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포기한 행위"라고 힐난했다. 이종필 변호사도 "등급표시의 주체를 민간으로 하는 게 당연한 시대적 요구"라고 거들었다.

답변에 나선 라종화 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장은 "내용등급표시제는 사전심의와는 다르며 자율등급제의 정착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19세 이상 관람가' 형식이 아니라 '이 내용은...입니다' 라는 식으로 정보제공자가 내용에 대해 표시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또한 정부가 사이버 공간을 통제하고 감시하려는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고 우려하고 그 근거로 '사업자가 모든 로그를 보관'하도

특 한 조항과 '불량이용자 DB구축을 의무화'한 조항 등을 제시했다.

개정시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들인 시간과 비용을 공개해줄 것을 요구하는 참석자도 있었다. 또한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보호센터가 인터넷유해정보에 대한 모니터 결과를 언론에 공개한 시점(7월 18일 조선일보)도 눈총을 받았다. "그간 아무런 일도 안하다가 공청회를 앞두고 특히 보수적인 언론의 시선을 끌어서 규제쪽으로 여론을 몰아가려는 술수를 부린 게 아니냐"는 김종남 YMCA 열린정보센터 사무국장의 지적에 참석자들은 공감을 표시했다.

정보에 관한 법인지 산하단체조직법인지 모를 만큼 위원회만 잔뜩 설치하고 법리 상으로도 부실덩어리인 이런 법을 서둘러 만드는 의도에 대한 의혹이 가득한 공청회였다. "과욕을 부리지 말고 그나마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는 개인정보보호나 제대로 하라"는 요구에 대한 과장의 답변은 "전향적으로 생각해보겠다"는 한마디였다. [이광길]

기사입력날짜 : 2000년 07월 21일

장여경 della@jinbo.net



상세검색 | 기사검색

독자게시판

http://news.jinbo.net

보통 | 과학 & 정보통신 | 사회 |

2001년 10월 6일

@ 정보통신

검열 유령이 온라인 뒤흔다

오프라인 무대에서 물러난 검열 유령이 온라인 세계에서 되살아나고 있다. 사이버공간을 달구고 있는 검열 논란의 진원지는 정보통신관련 법률 개정이다. 그 한복판에는 '검열관'이라는 의혹을 눈길을 받고 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아래부터 윤리위)가 자리하고 있다.

출처: 한겨레21

'정보통신질서확립법'에 따라 정부통제 강화... "사이버공간의 표현의 자유 말살한다"

오프라인 무대에서 물러난 검열 유령이 온라인 세계에서 되살아나고 있다. 사이버공간을 달구고 있는 검열 논란의 진원지는 정보통신관련 법률 개정이다. 그 한복판에는 '검열관'이라는 의혹을 눈길을 받고 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아래부터 윤리위)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 7월20일 서울 삼성동 무역회관에서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청회. 이날 공청회에서는 현행 통신망이용촉진법 개정안으로 정보통신부가 내놓은 '개인정보보호 및 건전한 정보통신질서확립 등에 관한 법률'(아래부터 질서확립법)을 둘러싸고 검열 공방이 오갔다. YMCA 신종원 시민사회개발부장은 "과거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보호원을 재경원 산하 기구로 설치하는 법으로 전략했듯이 정보내용에 대한 모든 심의권을 정보통신윤리위에 맡겨 국가기구가 통신망에 직접 개입할 근거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질서확립법은 인터넷 내용등급제 실시와 정보제공자들의 책임 확대, 통신규제 강화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들은 모두 윤리위의 대폭적인 역할 강화를 고리로 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참여연대 등 2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정부가 유해정보 차단을 명분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전반에 걸쳐 정부통제를 크게 확대함으로써, 통신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당할 우려가 높다"며 질서확립법의 전면철회를 요구했다. '사이버 영토 독립'을 외쳐온 통신단체들은 질서확립법을 또다른 '검열 시대'의 서곡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질서확립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두운 시절을 떠올리게도 하지만, 이 법안 제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쪽도 윤리위이다.

국가기구가 통신망에 개입할 근거 마련

심의기구인 윤리위에 대한 통신관련단체들의 '심의'는 윤리위가 민간 자율기구임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가권력이 사이버공간에 개입하는 도구라는 인식

에서 출발하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는 광운대 박영식 총장을 위원장으로 교수, 목사, 언론인 등 12명의 윤리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윤리위의 올해 예산 21억3천만원은 전액 국가가 대주고 있다. 윤리위가 올 상반기 동안 정보내용을 삭제하거나 이용정지 및 해지한 것은 8천건을 웃돈다.

지난 5월 백두청년회 명의의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게시판 글 삭제파문은 윤리위가 국가의 심의도구 노릇을 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예다. 윤리위의 한 위원은 “백두청년회 건은 청와대와 검찰 등으로부터 ‘우리가 하기 뭣하니까 당신들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이 왔다. 그래서 우리가 나선 것이다”라고 털어놨다.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기 곤란하자 윤리위에 악역을 떠넘긴 것이다. 그는 또 “어떤 사람들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를 놓고 정통부와 협의의 거치는 게 일반적이다. 정통부로부터 이런 안을 분과위에 올려 논의해 달라는 요청이 오기도 한다. 구성은 민간인들로 돼 있지만 정통부 산하기관이기도 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고백했다.

윤리위는 시정요구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 다만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불온통신에 대한 취급거부 명령을 내려달라고 건의할 수 있다. 물론 건의가 오면 정통부 장관은 곧바로 시정요구를 강제하는 명령을 내린다.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는 상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기중 변호사는 “누가 길거리에서 유인물을 돌리고 있을 때 구청직원이 나와서 명예훼손이라며 이를 막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판단도 거치지 않고 정보통신윤리위의 건의에 따라 정통부장관이 통신 게시물을 삭제하는 행위는 위헌”이라고 말했다.

이번 질서확립법에서 가장 논란을 빚고 있는 대목은 인터넷 내용등급제다. 등급제는 유해성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 콘텐츠마다 등급을 매기는 것이다. 문제는 등급 기준과 부여, 표시 방법은 윤리위가 맡게 된다는 데 있다. 진보네트워킹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은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사실상 검열이다. 등급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등급외 판정’을 내리도록 돼 있다. 영화상영을 아예 금지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질서확립법은 자율적으로 매겨진 등급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를 포함해 누구든지 등급조정을 요청하면 윤리위가 등급을 조정할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통신단체들은 등급제를 통신검열의 특수한 형태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은폐된 검열권력’은 이날 공청회에서도 드러났다. 공청회에서 데이콤 윤종성 상무는 “같은 정보내용에 대해 정보제공사업자마다 다른 등급을 매길 것이고 누구나 등급을 낮게 매기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등급조정이 불가피해진다. 결국 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등급부여 권한을 모두 윤리위가 담당해야 한다”고 ‘현실’을 정확히 지적했다. 윤리위쪽의 대답은 이런 현실을 이미 짐작하고 법안이 제정됐음을 보여준다. 윤리위 이영규 사무국장은 “윤 상무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 어차피 정보제공사업자들이 사전에 우리에게 등급을 매겨달라고 요청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일반에 공개되기 전에 윤리위가 등급을 분류하는 ‘사전심사’ 쪽으로 갈 공산이 큰 것이다.

영리목적의 청소년유해정보에 등급표시를 의무화하는 부분도 논란을 낳고 있다.

김기중 변호사는 “어디까지 ‘영리’로 볼 것이냐는 판단도 결국은 행정기관이 할 수밖에 없다. NGO의 인터넷활동도 광고를 받으면 영리고, 가입비를 받거나 회원 가입을 받아도 영리로 볼 수 있게 된다.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청소년유해정보가 음란물뿐만 아니라 건전한 시민의식 형성을 저해하는 것까지 포괄하고 있는 만큼 정치적 의견을 억제하는 데 악용될 우려도 있다는 얘기다.

등급 매기고 통신망 이용 원천봉쇄도 가능

불법정보에 대한 책임규정 역시 윤리위의 역할 강화에 맞춰져 있다. 질서확립법은 정보서비스제공자는 타인이 유통시킨 것이라도 그 정보를 알았거나 알았을 것으로 기대 가능한 경우 불법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 부분도 등급제와 같은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윤리위 이영규 국장은 “정보제공사업자들도 자신들의 책임을 피하려 할 것이다. 불법정보인지 아닌지를 자신들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알아서 통제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법적 보호가 끝나고 제재가 시작되는 불법정보의 경계선에서 윤리위가 ‘교묘히’ 개입할 공간을 찾은 것이다. 특히 윤리위로부터 불법정보라고 통보받은 경우 정보제공사업자가 이 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윤리위가 통신공간을 지배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는 것이 통신단체들의 주장이다.

이 질서확립법은 윤리위에 불량이용자들의 전체통신망 이용 자체를 아예 원천봉쇄할 수 있는 권력도 쥐어주고 있다. 정보제공사업자가 이용자들의 평소 로그기록을 보존하는 것은 물론 불량이용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윤리위에 통보해야 하고 윤리위는 이를 다른 정보제공자에게 알려줘 서비스 제공을 정지시키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진보네트워킹 장여경 실장은 “정보통신 윤리위가 준사법권까지 갖게 됨으로써 통신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다른 목적의 표현을 통제하는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며 “온라인매체의 피해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권력적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홍준형 교수는 “사이버공간은 자유롭고 강하게 표현한다. 표현의 자유도 오프라인세계보다 더 확대돼야 한다. 온라인 표현양식의 다양성을 감안해 전자 민주주의의에 맞는 새로운 규제철학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경희대 도정일 교수(영문과)의 말은 검열장치의 은밀한 잠입과정을 보여준다. “검열이 길들여져 내면화하는 순간 검열관의 얼굴과 이름은 상실된다. 검열이 내린 금지명령은 진리로 규범화하고 억압은 더이상 억압으로 의식되지 않는다”

주홍글씨 어떻게 새기나

인터넷 콘텐츠마다 등급을 매겨서 나이에 따라 정보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인터넷 내용등급표시제다. 상품에 붙은 바코드처럼 인터넷 HTML 문서에 등급을 표시하는 것이다. 질서확립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해 등급표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인터넷 등급제는 자율 등급부여와 제3자 등급서비스기관이 등급부여서버를 이용해 등급을 매기는 두 가지가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할 방침이다. 자율등급부여는 홈페이지를 가진 개인이든 영리목적의 정보제공사업자든 자기가 제공할 정보내용에 자율적으로 등급을 표기하는 것이다. 제3자 등급시스템은 등급이 표기되지 않은 정보내용에 대해 등급서비스 기관이 등급을 부여하는 서버(프락시-레이블뷰로)를 이용해 임의로 등급을 매기는 것이다. 최종 이용자는 등급별로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선별 소프트웨어를 컴퓨터에 설치하고 이를 통해 걸러진 정보를 이용하게 된다. 내용선별 소프트웨어는 학교 도서관 등 공공 시설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개인이나 가정에서는 설치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등급은 0~4등급까지 5단계로 나뉜다. 물론 불법정보로 분류돼 '등급외 판정'을 받는 콘텐츠도 있게 된다. 등급은 성, 노출, 폭력, 언어 등 4가지 범주에 걸쳐 매겨진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인터넷 정보의 국제성을 감안해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PICS 기술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RSACi와 SafeSurf의 내용등급체계를 기준으로 정할 방침이다.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정보 선진국들은 등급기준을 기업이나 민간단체가 정하고 자율규제에 맡기고 있다. 미국은 민간기업이 주도해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범유럽적 등급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EU는 자율 등급을 원칙으로 2002년부터 등급표시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일본은 온라인 서비스사업자들로 구성된 전자네트워크협의회가 자체 등급제를 개발하고 내용선별 소프트웨어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반면, 불법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가 차단하고 있는 싱가포르는 인터넷 서비스제공업자(ISP)와 인터넷 정보제공자(IP)에게 사업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다.

조계완 기자kyewan@hani.co.kr

기사입력날짜 : 2000년 07월 26일

오지영 delphy@jinbo.net



http://news.jinbo.net

2001년 10월 6일

상세검색 | 기사검색

독자게시판

도움 | 구독 | 정보통신 | 차액 |

@ 학생/대학신문

통신질서확립법 입법 예고

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안부럽다... 인터넷의 모든 정보 관리, 규제

출처: 대학생신문117호(00/09/05)



정보통신부가 인터넷에서의 국가정보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 20일 '개인정보 보호 및 건전한 정보통신 질서확립 등에 관한 법률(통신질서확립법)'을 내놓았다.

이 법안은 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및 인증을 포함하여 ▲도메인 관리, ▲불법·청소년 유해정보의 유통방지 및 제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책임, ▲정보통신부 장관의 자료제출 요구와 조사권 등을 인터넷 전반에 대해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골자는 인터넷에서의 '국가보안법'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에서의 '국가정보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10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모든 콘텐츠를 내 손안에

7월말부터 계속된 이 법안에 대한 반대시위는 8월 26일(토) 급기야 정보통신부 홈페이지를 다운시키기에 이르렀다. 이에 정보통신부는 해커들의 소행이라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이 사건의 배후자로 찍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압수수색까지 받은 상태다.

물론, 네티즌들을 흥분시킨 것은 법안의 내용이다. 통신질서확립법대로라면, 모든 콘텐츠는 등급이 매겨진다. 등급에 따라 접속자에게 볼 수 있는 정보가 선별적으로 제공된다. 만약 콘텐츠 제공자가 등급을 매기지 않고 '청소년유해 매체물'을 제공한 경우, 5백만원의 과태료, 또는 서비스가 중지될 수 있다.

청소년유해 매체물이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판단하는 '모든' 것이다. '불법정보'도 여기 포함되는데 불법정보란,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고사 또는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 및 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6조2항)'를 말한다.

은 국민의 눈을 대신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윤리위원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위촉한다. 말하자면 관변기구인 셈이다. 또 정보통신부 장관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를 요청하거나 정보취급 거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업무상황·장부 또는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상황이 이쯤되면 의도는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조사연구팀이 '해외실사 종합보고서(2000.6)'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반국가·친북적 정보는 계속 규제가 되어야 할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너무 오만하고 건방지다!

통신 검열반대(free.jinbo.net) 사이트를 열고 활발하게 반대운동을 펴고 있는 민주노동당 정보통신위원회의 문성준씨는 "통신질서확립법은 한마디로 통신검열이다"고 못을 박았다. 덧붙여 "이 싸움은 온라인에 통제를 가해도 된다는 신념과 다른 신념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어느 곳이든 국가가 통제할 수 있고 통제해야 한다는 발상이 없었다면 나타나지도 않았을 법안이기 때문이다.

안티사이트들의 반발은 생존을 건 싸움이다. 안티조선일보 사이트인 '우리모두'의 이계석씨는 "안티사이트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 명예 훼손이나 청소년 유해 사이트로 낙인찍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인터넷의 비판의 기능은 사라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는 청소년유해정보의 근거나 판단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그것이 어디까지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인터넷 신문 대자보의 이창은씨는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대체 누구를 위한 법안인지 의심스럽다. 21세기라고 하는데 법안은 암흑냉전시기로 후퇴하고 있다. 사회적 다양성을 무시하고 짓밟아버리고, 이걸 보고 이걸 보지 말아라 하는 법안의 발상자체가 너무 오만하고 건방지다"고 말했다.

물론 인터넷에도 포르노사이트 등 규제되어야 할 정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모두 국가에서 관리,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유아적인 발상임에는 틀림 없다. 국가가 관리한다고 해서 인터넷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포르노 사이트들을 모두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니까 말이다. 너무나 노골적인 이 법안은 결국 인터넷의 비판기능이나 반정부 단체를 죽이는 법안이 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현주아 기자>

가상연좌시위란?

지난 8월 26일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정보통신부 홈페이지의 접속불능(서버다운)사태는 일종의 '시위'로 발생한 것임이 밝혀졌다. 가상연좌시위란 홈페이지의 '새로고침' 버튼을 계속 누름으로서 가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시위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방법은 최근 외국 사회단체들이 OECD 반대 등 온라인 시위를 할 때 쓰인 방법이다.

정보통신부 게시판에는 가상연좌시위 프로그램 즉, 새로고침 버튼이 계속 눌러지는 프로그램이 올라와 있다. 정보통신부의 서버 다운사태는 온라인 시위에 참여한 네티즌들은 '이를 불법이라고 한다면, 모든 집회는 불법이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기사입력날짜 : 2000 년 09 월 13 일

대학생신문 cubs@jinbo.net



http://news.jinbo.net

2001년 10월 6일

상세검색 | 기사검색

독자게시판

도움 | 과학 & 정보통신 | 사회 |

@ 정보통신

정보통신윤리위, 다음커뮤니케이션에 경고

동호회 형식으로 운영돼 온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카페'가 정보통신윤리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불건전 정보를 유통시키고 있는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출처: inews

김윤경기자 yoon@inews24.com

2001년 5월 25일

동호회 형식으로 운영돼 온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카페'가 정보통신윤리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불건전 정보를 유통시키고 있는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정보통신윤리위는 다음측이 운영하는 동호회 '카페'가 불건전 정보 유통이 심각한 점을 지적,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58만여개 2천100만여 회원을 보유하고 동호회 형식으로 운영돼 온 카페가 음란 소설과 동영상, 게임 등 불건전 정보를 자주 주고받고 있음에도 다음측이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번 경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다음 측에서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다음의 카페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또한 P2P(Peer to Peer) 시스템을 응용하는 '애니나라'에 대해 음란영상, 성인방송 링크파일, 음란소설 등 유통되는 정보의 불건전성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 이용해지 조치를 내렸다.

기사입력날짜 : 2001년 05월 25일

정우혁 patcha@patcha.jinbo.net

진보네트워크

참세상 뉴스

상세검색 | 기사검색

독자게시판

http://news.jinbo.net

주요 | 과학 & 정보통신 | 사회 |

2001

@ 정보통신/참세상

10월

6일

64개 시민사회 정보통신부의 시행령에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

편집실 | 5월 24일 오후, 현재 정보통신부(이하:정통부)에 의해 7월부터 시행되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민중기자) 검열반대 공동행동 및 65개 제 사회 시민단체들이 작성한 의견서가 민원실에 제출되었다

참세상
기자 등

취재
요제



5월 24일 오후, 현재 정보통신부(이하:정통부)에 의해 7월부터 시행되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 대해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및 65개 제 사회 시민단체들이 작성한 의견서가 민원실에 제출되었다. 제출과 함께, 담당자와의 면담이 있었다. 이 자리에는 대자보,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노동네트워크, 진보인권연대 등 7개 단위가 참여를 했다.

정통부의 나봉화 과장과 면담이 이루어졌다. 면담의 주요내용은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한 실행여부..(민간단체에 의한 자율등급제라는 입장만을 계속고수하였음.) 정통부는 민간단체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안 제 53조 1항에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를 통한 표시의무가 있으므로, 2항(전자적표기), 3항(정보통신권고 조치) 등에 대한 입장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정통부의 경우는 일관된 입장으로 인터넷내용등급제는 민간단체(정통운)에 대한 자율등급제라는 일관성, 되려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해 갔다.

이에 대해 시민 사회 단체들의 입장은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가 1) 국가의 개입을 보장할 수 있으므로 등급표시제를 법으로 정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등급기준을 정하는 것은 등급표시를 사실상 강요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실장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이번 시행령에서 등급제 관련다고 언급했다. "시행령안 제3항은 그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정보통신부 장관의 고시로 이월하여, 인터넷권한 하에서 법률에서 위임하는 범위를 넘어서 기술적으로 시행될 수도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등급제라는 것을 기술적으로 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터넷 등급제의 소지를 남기는 조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민사회단체 의견서를 참조)

면담과 관련하여, 정통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상당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한국노동네트워크 김승만 사단 사회 단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의견서 제출과 정식 면담을 요청한 단체 실무자들과의 면담에 있어서, 정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히, 정통부의 공식입장인지 아닌지는 불분명하지만 간담회 중 정보통신이라는 단위가 소수이지 않느냐는 황당한 주장을 펴으로써, 단체들을 무시하는 태도로 임했다. 이에 공동 단위인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항의를 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측은 7월 시행령이 발표되기 전 6월을 집중 투쟁기간으로 설정하고, 온라인 위, 토론회 등등의 사업들을 준비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사항 :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 <http://freeonline.or.kr>)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전문)

- 시행령안 제23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의 제2항과 제3항에 반대함 -

1. 시행령안 제23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는 법률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의 위임을 받아 청소년법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안 제23조에서는 이를 위해 제1항에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 함은 ‘19세 미만 이용불가’라는 취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문자 또는 영상으로 표시하는 것 있습니다.

2. 하지만 법률의 위임을 받은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에서 그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외에 제2항과 같이 ‘기호■부호하여 전자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와 같은 별도의 기술적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매체물임을 표시하’도록 규정한 법률 제42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3. 또 지난해 이 법률의 개정 과정에서 법률개정안 중 여러 사회단체와 네티즌, 그리고 국회가 가장 반대했던 부분은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심사보고서(2000.12)에서 이 법률 있던 이른바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가 1) 국가의 개입을 보장할 수 있으며 2) 자율규제라고 하면서 등급표시제를 윤리위원회가 등급기준을 정하는 것은 등급표시를 사실상 강제될 수도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령안에서 제1항에 “■ ‘19세 미만 이용불가’라는 취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했음에도 굳이 제2항을 두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와 함께 ■ 전자적으로 표시하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시행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시행령안 제3항은 그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정보통신부 장관의 고시로 이월하여,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장관의 임하는 범위를 넘어서 기술적으로 시행될 수도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는 위 법률의 입법취지와 입법기관인 국회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4. 한편 위 법률 제64조는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로운 이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 제42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령 규정은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요소가 되므로, 법률이 위임하는 사항에 한하여 엄격히 통제된 규정이 되어야 합니다 방법’으로 볼 수 없는 ‘전자적 표시방법’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법률이 위임하고 있지 아니한 새로운 구성요건와 형을 법률에 의해 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5. 따라서 시행령안 제2항과 제3항은 인터넷내용등급제를 기술적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부 나봉화 과장과 대면하는 모습. 정통부 관계자들은 대면 내내 상당히 불친절하고, 좋지



상세검색 | 기사검색

독자게시판

http://news.jinbo.net

주요 | 과학 & 정보통신 | 사회 |

2001년 10월 6일

@ 문화

너희는 '음란범'이라 부르지만

교사이자 예술가, 그리고 시민인 한 남자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러하다. 주민 천 여명에 티켓 다방이 아홉 개인 한 시골 마을이 있다.

출처: 대자보

너희는 '음란범'이라 부르지만,
나는 '훌륭한' 미술 교사라 부르마!

교사이자 예술가, 그리고 시민인 한 남자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러하다. 주민 천 여명에 티켓 다방이 아홉 개인 한 시골 마을이 있다.

그리고 이 곳의 조그마한 중학교에는 예술가이자 교사인 40대의 한 남자가 있다. 그는 한국 사회의 교육 민주화를 위해 5년이라는 시간을 희생할 정도로 '참교육'의 꿈을 잃지 않은 선생님이다. 또한 그는 '중앙미술대전'과 '신세계미술대전'에 입상했을 정도로 미술판에서도 알아주는 역량 있는 작가다. 따라서 그는 꽤 오랫동안 미술교사이자 예술가로서 시골마을의 아이들과 함께 호흡해왔다.

하지만 40대 중견작가이자 미술교사였던 그의 삶은 한 학생의 홈페이지 방문이라는 평범한 행위를 통해 세상 속으로 '아우팅'(outing)되었다. 제자는 우연히 찾아간 선생님의 개인 홈페이지에서 선생님 부부의 나체사진을 보았고, 이 사실이 학부모에게, 다시 학부모 회장에게, 그리고 교장과 교육청 장학사에게 곧 바로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부터의 스토리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는 곧바로 교장에게 불려갔고, 학부모들은 홈페이지에 실린 작품, 구체적으로는 나체 사진과 성기그림이 교육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홈페이지 폐쇄를 요구했다. 당장 폐쇄하지 않으면 등교거부 등 집단행동을 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그는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부모들이 원하지 않으시니 학생들은 입장을 삼가달라는 메시지를 띄울 수 있다"라고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학부모들은 교사나 예술가 중 하나만을 선택하라며 (홈페이지 폐쇄를 통해 교사로 남으라고) 강요하였고, 결국 이를 수용할 수 없었던 그를 대검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하였다. 그리고 그는 '음란물 유포'와 '청소년보호법 8조 1항' 위반이라는 죄명으로 긴급 체포되었고, 다행히 며칠 후 구속적부심에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풀려났다. 하지만

지금도 검찰에 의한 일방적인 조사는 계속되고 있으며, 매스미디어는 사건의 맥락을 애써 무시한 채 오직 선정적인 상품으로 그를 취급하고 있다. 그리고 그와 그를 둘러싼 음란성 시비는 당분간 계속될 예정이다.

또 음란이야?

충남 서천의 비인중학교 김인규 미술교사의 이야기는 이렇게 사회화되었다. 물론 "시골 정서를 이해해야지....", "그까짓 이미지 하나 가지고 뭘 그래 삭제하면 되지!", "표현의 자유도 좋지만 교사가 그래서야...." 등의 한 마디를 통해 흔하데 흔한 음란성 시비로 흘러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어설픈 중재는 갈등을 감추고, 감추어진 갈등은 언젠가 증폭하여 폭발하는 법이다. 더욱이 한국 사회에서 지겹도록 반복되고 있는 '음란의 잣대'는 이제 더 이상 감추어질 수 없는 수위에 다다른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나는 이 한 남자를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지지하고자 한다. "철없는 녀석"이라는 점잖은(?) 끈대들의 손가락질을 즐기면서 말이다. 그리고 음란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사상과 표현이 검열 가능한 한국 사회에 온 몸으로 저항하고 있는 그에게 진정으로 고마움을 느끼면서....

먼저 어긋난 출발이자 잘못된 오해인 '음란'에서부터 시작해 보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적용되는 그 음란이란 위대한 개념 말이다. 음란이란 용어가 한국 사회에서 지나치게 추상적인 잣대라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적어도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헌법재판소마저 음란이란 개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음란이란 인간 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1998. 4. 30. 선고95헌가16결정)

그렇다면 과연 김인규 교사 부부의 나체사진을 음란물로 볼 수 있을까? 우선 "예술, 미학, 어쩌고" 하는 어려운 말은 논외로 할지라도 그의 홈페이지를 한번이라도 방문해 본 사람이라면, 그의 사진이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성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는 경우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사실 문제가 된 김인규 교사 부부의 나체사진은 오히려 몸에 대해 상업적이고 남성 편향적인 우리 사회의 "외설적인 시각"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제기에 가깝다. 즉 임신한 부인과 함께 한 그의 평범한 나체사진은 홈페이지에 게재된 다른 사진들과의 맥락에서 보았을 때 "신데렐라(상품화 된 육체)가 될 수 없는 우리의 몸"을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우리 사회의 일상적 음란성을 폭로하고 있다. 즉 역설적이게도 김인규 교사의 사진은 음란물이기보다는 음란물에 둘러싸인 사회를 비판하는 작업에 가깝다. 어떻게든 신체를 상품화하여 불특정 다수를 꼬드겨 보려는 시도와 김인규 교사의 작업은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더욱이 성문화에 대한 '에로틱 아트'나 '바디 아트'와 같은 현대 미술의 접근은 이미 문화예술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

고 이러한 경우 신체의 부위가 "얼마나 보이고 안 보이는가" 하는 것은 결코 음란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작품의 전체적인 맥락과 신체의 표현 방식에 대한 비평을 통해 예술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자 기본적인 상식이기 때문이다. 즉 적나라하게 보여진 "거시기"가 판단의 근거가 아니라 "동시대의 문화적 의미, 미학적 가치, 사회적 관습이 신체를 둘러싸고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에 눈을 맞추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기의 노출이나 나체의 이미지 자체는 결코 예술작품의 평가 기준이 될 수 없으며, 만에 하나(한국에서는 백발백중이지만) 사회적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할지라도 이는 전문성을 비롯한 다각적인 논의를 통해 충분히 평가하고 검증한 후 합의해 나가는 합리적인 과정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김인규 교사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권력이 자의적이고 보수적인 미학(그것도 미학이라면....)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절대적인 판단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사법적 권력을 휘두르는 세상에서는 21세기가 아니라 31세기가 되어도 문화 예술의 창작성, 표현의 자유, 삶의 다양성에 대한 보장이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교사와 예술가는 공존할 수 없다?

다음으로 사건의 발생과 동시에 보여준 사회적 쟁점을 살펴보자. 학부모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삭제하거나 교사를 그만 두라"는 주장을 쉽게 펴고 있다. 즉 음란도 음란이지만 "교사라는 점이 더욱 괴씸하다"는 것이 그에 대한 이번 마녀사냥의 주된 논리이다.

하지만 이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매우 비논리적인 발상 그 자체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주장은 그로 하여금 작가의 양심과 사회인으로서의 신분 중 하나만을 선택하라는 매우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요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김인규 교사가 지금까지 매우 열성적이고 창의적인 미술교사라는 평을 들어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매우 즉흥적이고 비교육적인 주장이며 동시에 교권에 대한 일방적인 침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논리는 신체를 주제로 하는 예술가들은 비교육적이라는, 그래서 모든 작가는 교사와 같은 사회권이 박탈되어야 한다는 식의 신체와 성에 대한 모든 표현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청교도적 순결주의가 낳은 편집증에 불과하다. 즉 미술교사에게 있어 교사라는 주체와 예술가라는 주체는 결코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러한 발상 자체가 가장 비교육적이고 파행적인 예술 교육을 이 땅에서 재생산하고 있는 이유이다. 말로는 "창조성", "다양성"의 부재를 현실 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정작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교육 방식이나 이를 실천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한국의 문화보수주의와 경직된 교육풍토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주장의 배후에는 바로 미술교사의 예술적 창작행위와 교육활동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근거 없이, 모든 성적 표현을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규정하는 지배 이데올로기(청소년 보호라는 외피를 쓴!)와 일부 학부모들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선입견이 존재한다. 만약 김인규 교사의 사진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단지 나체사진이기 때문에 금기시 되어야 한다는 논리라면, 어느 학

교 미술실에서나 볼 수 있는 '다비드' 조각상을 비롯한 모든 나체상은 모두 폐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미켈란젤로는 음란법의 기원으로 미술사에 영원히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즉 김인규 교사의 개인 홈페이지를 음란이라는 잣대로 구속하기 위해서는 "누가 봐도 불순한 의도에서 행해졌거나", "명백히 현존하는 악영향을 즉각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지속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미치고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이미 언급했듯이 김인규 교사의 홈페이지에는 이러한 혐의가 전혀 없으며, 오직 몸에 대한 반성적 성찰만이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인규 교사와 그의 홈페이지를 비난하는 수많은 주장들은 아직까지도 음란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인신 공격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언제나 그러했듯 오직 "음란하다" "음란하잖아"라는 억지만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김인규 교사의 활동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의 작품이 청소년에게 유해할 것이라고 자의적으로 단정 지은 후 음란물 유포죄로 긴급 체포한 경찰, 나아가 영장기각의 쪽팔림과 긴급 체포의 당위성을 위해 일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 성적 표현에 대한 어떠한 전문성도 없으면서 홈페이지 폐쇄 전문가가 되고 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의 설부르고 시대착오적인 발상과 막가파식 행동은 더 이상 용납되어질 수 없다.

"저는 게시판에 있는 몇 가지의 글 중에서 자식을 선생님께 가르쳐 달라고 할 수 있는냐는 지극히 감정적인 말에 대하여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나의 소중한 아이를 세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르쳐주실 수 있는 선생님께 맡기고 싶습니다."

이번 사건 직후 김인규씨의 홈페이지에 남겨진 어느 제자의 이야기이다. 과연 음란법으로 체포된 교사에게 참교육을 배웠다는 그녀(그)의 역설을 경찰과 검찰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나아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의 작업을 음란물로 규정하고 폐쇄를 종용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그 고상한 청소년 보호 이데올로기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음란'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성적 표현물을 억압하던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한다. 결국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그 어떤 법 조항보다도 결국 타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의미하고, 이는 문화적 다양성과 주체간의 차이를 인정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구에게는 뛰어나고 감동적인 표현이 다른 누구에게는 가장 불쾌할 수도 있다. 하지만 누구나 주관적 판단에 있어 오류의 가능성은 존재하며, 이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설부른 규제와 처벌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가를 반증한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소수의 똑똑한(?) 관료와 건전한(?) 어르신들에 의해 자행되는 일방적인 판단과 규제가 아니다. 인터넷을 비롯해 무수하게 존재하는 다양한 사상과 표현에 대한 보다 폭넓은 자유와 관용, 나아가 사회적 이해이다.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정보팀장
이원재 (redgang@orgio.net)